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783

발의연월일: 2020. 12. 21.

발 의 자:신현영·강민정·김경만

김홍걸 • 문진석 • 박홍근

송영길 • 양정숙 • 윤건영

윤미향 • 윤영덕 • 이광재

이규민・이수진・이수진비

이용빈 · 이탄희 · 허 영

허종식 · 홍정민 · 황운하

의원(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대피해아동 정보 및 학대 발생 우려가 있는 위기의심아동 정보를 학교에 주기적으로 공유하여 학대, 재학대 여부를 면밀히관찰하고 있음. 또한, 학대피해아동 지원을 위해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을 중심으로 아동복지전문가, 시설종사자들이 함께 협력하여 아동보호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피해아동 관련 정보 요청권자의 범위에 아동과 밀접한 기관인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해 정보공유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아동학대정보 요청권자에 유치원 원장, 어린이집 원장으로 범위를 확대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 피해아동 정보를 유치워. 어린

이집도 공유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제28조의2제3항제2호의 2 및 제2호의3 신설).

법률 제 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3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의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 2의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의2(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	제28조의2(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
템) ①・② (생 략)	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③
해당하는 자는 아동의 보호 및	
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아동학대정보	
시스템상의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	
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	<u>,</u>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과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	
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신 설></u>	2의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u><신 설></u>	2의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